# 15. 인권센터 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제외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하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써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2차 가해”란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11. “2차 피해”란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다.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사. 그 밖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제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처리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장은 피해자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피신고인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이 신고 되었음을 인지한 이후, 피해자와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

④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 조사자 그 밖에 사건처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및 수집된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1. 신고인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당해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
2. 사건의 조사와 처리과정에서 교내외 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불이익 및 부당한 처우 금지) ① 인권침해 등의 피해자, 신고인 및 사건 조사에 협력한 자 등에 대하여 임용, 승진, 급여, 성적 등에 관한 불이익한 조치를 하거나 비방 기타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과정에 있어서 피신고인 혹은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없다.

## 제 2 장 인권센터 구성과 운영

제6조(인권센터 구성)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센터장
2. 간 사
3. 상담원
4. 직원 또는 조교

②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인권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제반 업무와 운영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본교 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장을 보좌하고 일반사무를 관장한다.

⑤ 상담원은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있으나 성폭력·성희롱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⑥ 상담원은 관련 상담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상담업무 및 센터장이 부여한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⑦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인권침해 등 관련 전문교육을 정기 혹은 수시로 이수하여야 하며, 총장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7조(인권상담실, 양성평등성상담실)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접수, 상담, 처리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권상담실과 성평등상담실을 운영한다.

② 인권상담실은 성폭력ㆍ성희롱 외의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성상담실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신고 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2. 피해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3. 접수된 사건의 조사와 결과 보고
4. 기타 인권침해 등의 재발 방지 조치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③ 양성평등성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인권상담실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성폭력·성희롱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및 기록
2.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및 필요한 조치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의 보고
4.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연1회 이상 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5. 기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 조치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6.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 및 조사 요구

##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인권 침해 등의 예방 및 관련 사건의 조사·처리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권침해 등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처리(중재·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3.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기타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4. 센터 규정 또는 관련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직원,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④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센터의 상담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위원은 당해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인권 침해 등 사건의 처리, 판단 기준이 합리적·객관적 원칙에 기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등의방법으로 진행되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수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제 4 장 조사와 처리 등

제13조(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직접방문, 우편, 전화, 통신 등 가능한 방법으로 센터에서 요청하는 양식에 맞추어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 신고할 수 없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센터는 기 조사 완료 및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지않으며, 이에 따라 재신고할 수 없다.

제14조(신고의 각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인이 제3조 제7호 “신고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제13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운영위원회에서 조사 개시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제14조의 2(신고 각하 사유의 고지) 센터장은 신고인의 신고를 각하할 경우 우편,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신고 각하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임시조치) ① 피신고인의 신고인 또는 피해자와의 접촉 시도, 명예훼손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보호에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센터장은 조사 개시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와의 접촉, 명예훼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수업 및 업무에서 배제 포함), 격리 등의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피신고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 센터장은 이

를 사유로 별도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원 사건에 관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 이를 가중징계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제16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는 신고에 따라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상담원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센터는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의 방법 및 조사결과 보고) ① 센터는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신고내용의 진위,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참고인 그 밖에 사건 관련자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결과의 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의 조사결과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명시된 피신고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포함하여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9조(징계 요청) 센터장은 조사 심의결과가 학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구제조치) 센터장은 총장의 승인 하에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또는 인권 침해 등의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 및 그 소속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1조(제2차 피해의 방지)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는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조사행위

2.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이유로 조사자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자를 새로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5 장 보 칙

제22조(수당 등 경비) 센터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운영세칙) 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기관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 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